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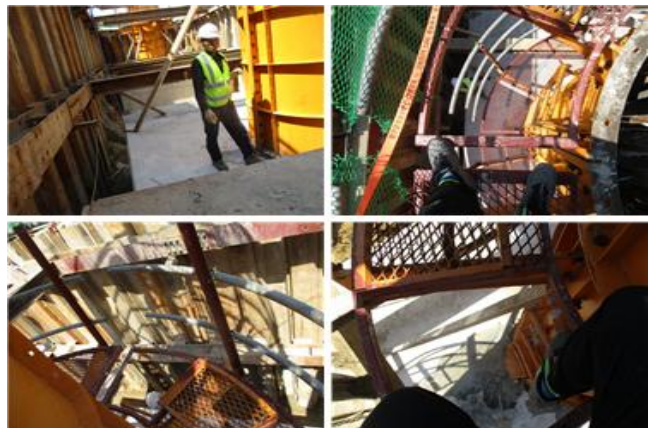
[창동 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보차도교 건설공사(장기1차)]

- 점검일시 : 2022.05.10 (화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정달영, 최영준

○ 추락재해 예방(토목부)

- 1) P2는 해체를 위해 난간을 해체하고, 웨빙띠 등으로 표식을 해 놓았으나 용단 및 기타 작업을 위해 하단으로 가는 작업자 등은 추락재해의 위험이 있으니 해체 및 양중시 필요한 공간만을 해체하고 작업자를 접근금지 시키는 등 추락재해 감소조치를 하여야 함.
- A2 배면은 지중경사계 및 E/A 하중계 등 계측을 위해 사람이통행하므로 추락재해의 위험을 방지할수 있는 조치 요함.
- P1은 수직사다리 위치에서 난간의 불연속, 수직사다리 상부 잡을 곳이 없어 불안정한 행동으로 추락재해의 위험이 있으니 보완 요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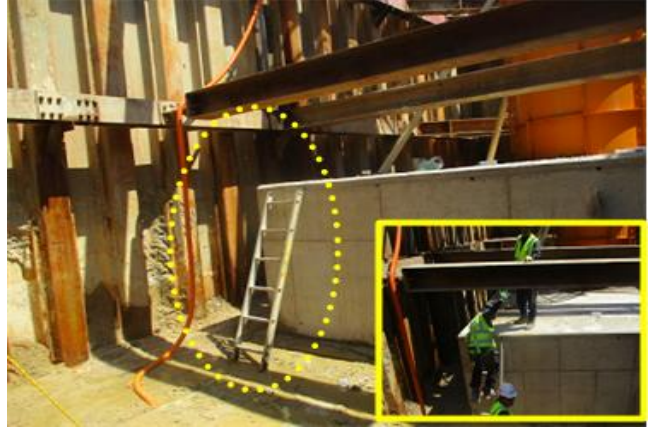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,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, 제 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



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

- 2-1) P1 콘크리트 타설작업 진입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일자형 사다리는 여장길이가 짧아 작업자 이동간에 전도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며,
- 2-2) P2 구간에서 설치되어 있는 가설통로는 난간이 해체되어 있고, 진입구간에 웰빙띠가 간섭되어 있어 작업자 이동간에 추락, 전도 등의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으니 보완을 실시하여 관리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, 제23조(가설통로의 구조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

- 3) P2 용단작업을 위한 LPG 및 산소가스 용기를 트럭에 적재한 상태로 연결하였고, 소화기 없이 사용중이니 작업대차 등을 사용하고, 소화기 비치 요함.

※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화재폭발질식-1(고압가스 용접, 용단 작업)



○ 감전재해 예방(토목부)

- 4) P1, A2의 가설전선이 미접지 상태이니 가설전선은 수시로 접지상태 확인하여 관리하기 바람.
- 중차량이 통행하는 통행로에 전선이 놓여져 있고, 납작한 상태이니 전선보호 등을 하여 누전, 감전 재해를 예방하기 바람.



※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감전-3(가설전선)



○ 흙막이가시설 안전(토목부)

- 5) 교각2의 2단 버팀보를 해체중이며, 해체 전 흙막이가시설 컨설팅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였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 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

※ 2022년 중대재해 제로화!를 위한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(안전관리과-1550, 2022.2.28.)



○ 건설기계 안전(토목부)

- 6-1) 작업장에 대기중인 토사반출 차량후면에서 작업자가 안전의식 없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상황이 목격되었고,

- 6-2) 각종 작업차량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신호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작업중에 작업자와이 충돌, 협착 등의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으니 신호수 재배치, 명확한 신호체계를 확립하고 전 작업자를 대상으로 사고사례(건설기계 협착, 충돌 등)를 중심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(접촉방지)

※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P131(건설기계-001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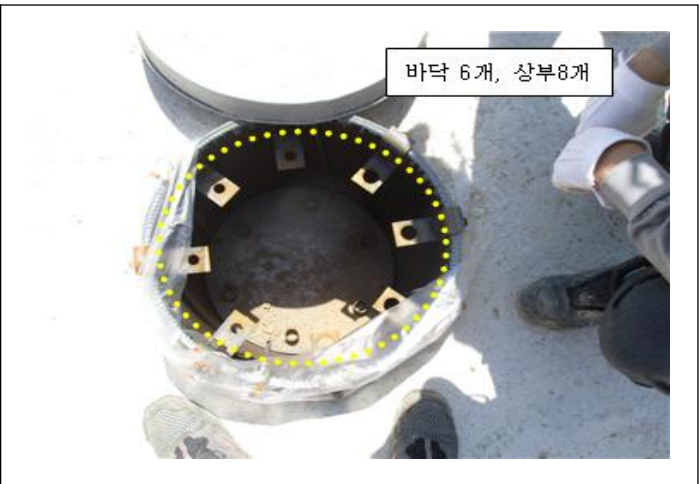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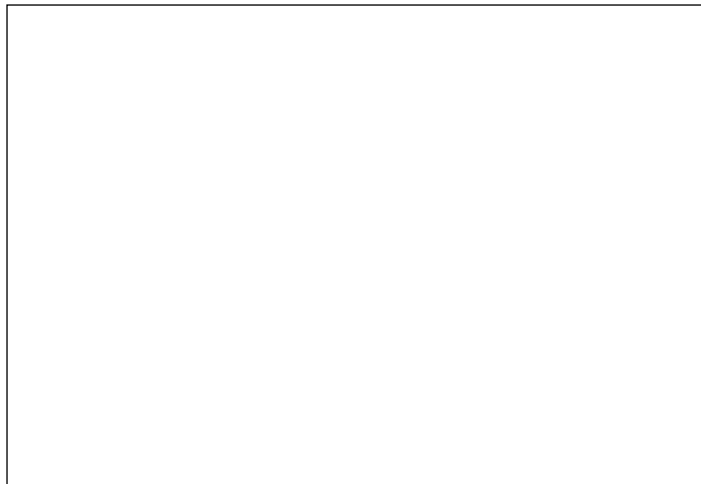
○ 기타 안전관리(토목부)

- 7) 파형강관을 양중 중인 카고 크레인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를 운전 중이므로 안전모 착용은 공사공간내 모든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므로 교육 관리 요함.

- A2 램프 기초 두부보강장치의 개수가 일치하지 않아 구조적 안정성이 훼손될수 있으니 강관 두부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치 요함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





○ 기타 안전관리(토목부)

- 8-1) 건설기계가 빈번하게 진출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호수의 통제조치가 미흡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과 신호수간의 접촉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되었고,
- 8-2) 작업장 진입구간에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음에도 시민이 작업장내로 통제없이 진입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으니 재발되지 않도록 신호수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장 통제 및 주변 시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.

